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5175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
의 소송수계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2.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정영주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A 사이에 2020. 12. 28.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2. 28. 접수 제1778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4. 13. 접수

제35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2018. 1. 24.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F은행,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의 대표이사인 H, B가 E의 원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금액 315,000,000원,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대출기관	당초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연대보증금액
1	2018. 1. 24.	F은행	2019. 1. 24. (2022. 1. 21.)	630,000,000원 (700,000,000원)	315,000,000원
2	2018. 1. 24.	G은행	2019. 1. 24. (2022. 1. 21.)	270,000,000원 (300,000,000원)	135,000,000원

2)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 G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21. 7. 2. 기업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21회합141호)을 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F은행 및 G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① 2021. 8. 26. G은행에게 207,660,169원을, ② 2021. 9. 2. F은행에 573,751,8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의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및 A의 재산상태

1) A는 2020. 12.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C’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2. 28. 접수 제177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A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F은행, G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다수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B의 피고 D에 대한 처분행위 및 B의 재산상태

1) B는 2021. 4. 13.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4. 13. 접수 제352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B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F은행, G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다수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A, B의 회생절차개시 및 이 사건 소송수계 등

1)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수원지방법원 2021회단148)을 하였고, 2021. 1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서 원고

기술보증기금을 소송수계하였다가, 위 회생절차에서 2022. 7. 12.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져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수원지방법원 2021회단149), 2021. 12.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서 원고 기술보증기금을 소송수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관리인을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A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 12. 28.경에는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주채무자인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시점이었어서[E는 그 무렵 다수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C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가까운 장래에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2021. 7.경 E는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2021. 8. 26. G은행에, 2021. 9. 2. F은행에 각 E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E의 연대보증인인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E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A 및 E와 2014. 6.경부터 지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있었고,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가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 기술보증기금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A의 채무 상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주장 및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관리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은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은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B가 배우자인 피고 D에게 그 회생신청일(2021. 10. 20.)로부터 1년 이내인 2021. 4. 1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 소정의 부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5. 11. 27.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18. 12. 6. B와 피고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는데, 피고 D만이 분양계약의 당사자였고, 피고 D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 D이 2018. 9.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인바, 피고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의 요구로 B와 피고 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피고 D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피고 D이 변제하다가 B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단순히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당사자가 피고 D인 사실, 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이 327,600,000원(1차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22,760,000원, 1차 내지 6차 중도금 각 32,760,000원, 잔금 98,280,000원)이고,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분양계약상 1차 및 2차

계약금이 각 지급된 사실, 피고 D 명의로 2018. 9. 28.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273,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실행되고 이후 2021. 1. 28.경까지 매월 약 원금 및 이자 합계 180만 원 이상의 금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행의 요구로 피고 D과 B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나 피고 D과 B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없는 점,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시기 중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D이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8. 9.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매월 18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의 출처가 피고 D의 자금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D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21. 4. 13.자 증여는 원고 관리인의 부인의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 D에게 송달된 2022. 3. 21. 부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관리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철근콘크리트 경량철트러스조 24층 아파트

1층	465.805㎡	2층	459.405㎡
3층	459.405㎡	4층	459.405㎡
5층	459.405㎡	6층	459.405㎡
7층	459.405㎡	8층	459.405㎡
9층	459.405㎡	10층	459.405㎡
11층	459.405㎡	12층	459.405㎡
13층	459.405㎡	14층	459.405㎡
15층	459.405㎡	16층	459.405㎡
17층	459.405㎡	18층	459.405㎡
19층	459.405㎡	20층	459.405㎡
21층	459.405㎡	22층	459.405㎡
23층	459.405㎡	24층	459.405㎡
지층	419.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1.2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35950.2㎡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30057.7㎡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 20805.3㎡

대지권의 종류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86.813.2분의 24.2368.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06.0081㎡	2층	459.405㎡
3층	459.405㎡	4층	459.405㎡
5층	459.405㎡	6층	459.405㎡
7층	459.405㎡	8층	459.405㎡
9층	459.405㎡	10층	459.405㎡
11층	459.405㎡	12층	459.405㎡
13층	459.405㎡	14층	459.405㎡
15층	459.405㎡	16층	459.405㎡

17층	459.405㎡	18층	459.405㎡
19층	459.405㎡	20층	459.405㎡
21층	459.405㎡	22층	459.405㎡
23층	459.405㎡	24층	459.405㎡
25층	459.405㎡	26층	459.405㎡
27층	459.405㎡	28층	459.405㎡
29층	459.405㎡	30층	459.405㎡
31층	459.405㎡	32층	459.405㎡
33층	459.405㎡	34층	459.405㎡
35층	459.405㎡	36층	459.405㎡
37층	459.405㎡	38층	472.3719㎡
39층	472.371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97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시흥시

대 5238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52387분의 38.9973.

